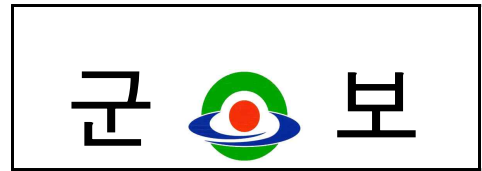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21호 2023. 1. 30.(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69호)
- 202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3-17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
- 예천군 여성회관을 여성뿐 아니라 지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예천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운영상의 제반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11조)

- 예천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정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예천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안 제22조)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방안 : 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23조 ~ 안 제25조)

-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지원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sjm122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1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 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한 자로써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개최
2. 평생교육 관련 국내·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 실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재료비 지원

③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위탁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2. 예천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
3. 경북도립대학 평생교육원장
4. 예천군의회 추천 군의원
5.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운영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예천군 평생학습관 등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6. 제13조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증의 교부 등) 군수는 군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용 허가)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8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수납된 사용료 등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가족
5.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세대
 10.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 (다만, 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한다)
- ②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생에 대한 사용료 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시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4장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제23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이하 “마을지도자”라 한다)가 된다.

제24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① 마을지도자는 마을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예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예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5조(지원) 군수는 마을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
2.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
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5.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 칙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 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 관련기

관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예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천군 평생교육협의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평생학습관 사용료 기준액

구 분	기준	요 금	비 고
강 의 실	1회	10,000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시간을 초과시에는 매1시간마다 사용료의 20% 가산

【별표 2】

예천군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반환범위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평생학습관 사용 및 교육 수강 개시 2일 전에 사용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1. 평생학습관 사용 및 교육 수강 개시 1일 전에 사용 취소한 경우	반액 반환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신청서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사 용 자	주 소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사 용 목 적			사 용 예 정 인 원	
사 용 료	원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허가서

사 용 시 설				
사 용 자	주 소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사 용 료	원			

위와 같이 예천군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허 가 조 건

1.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비품 등)일체의 보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설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차이는 예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료 면 제 신 청 서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참 석 인 원	

위와 같이 귀 평생학습관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참고 1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예 천 군 수

I 개 요

1.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매월 말 퇴직

2. 신청대상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절차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행정지원실로 제출

II 명예퇴직신청자 선정 및 제한

1.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가. 제3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여 심사결정.

2. 명예퇴직 대상자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사.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아.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III 퇴직대상자의 통지

- ☐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되면 그 결과를 즉시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IV 퇴직수당 지급

- ☐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V 기타사항

1.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나 비위조사 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의 자필『명예퇴직원』을 반드시 확인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을 참조하거나 행정지원실 행정팀(650-6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	-----	--

신청인	① 소속	③ 공무원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생년월일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기재란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선고형:)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 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년 월 [] 별정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예천군수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급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급·계급 :

4. 성 명 :

○ 명예퇴직 사유 :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해당여부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지 여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인지 여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는 자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경우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지방공무원법제2조및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인지 여부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지 여부		
	그 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		
조사 작성 및 확인자			
2023년 월 일			
직급		성 명	⑨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장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비 고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text{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times \left[60 \frac{\text{정년잔여월수}-6}{2} \right] +$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 고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